

복잡한 환경분쟁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환경분쟁조정 신청안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TEL. 02-2133-4251~3
edc.seoul.go.kr

보다 쉽고, 보다 빠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안내

시민 여러분의 환경분쟁 고민, 서울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ENTS

환경분쟁에 대한 이해 03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11

환경분쟁 참고자료 25

관련서식 32



STEP
01

환경분쟁에 대한 이해



환경분쟁이란 ?

환경분쟁의 의의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가시화, 현재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환경갈등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악취,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 경로의 변화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갈등 상황 발생>



시민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느날 사전 안내도 없이 집 앞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양해를 바란다는 말 한마디면 참을 수 있는데, 공사현장에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사하고 있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공사

저희는 시민들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은 기본이고 필요시 이동식 방음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환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 뵙고 양해를 구하고 있고 모두 이해해 주시는데, 왜 ○○○님께서 이해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의 사례에서처럼 갈등이란 개인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이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심화되어 가시화, 현재화 되는 경우 분쟁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환경갈등의 심화로 인한 환경분쟁의 발생>



따라서 환경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법적인 소송 방식에 의하기보다는 당사자의 편의 및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방식(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분쟁의 원인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조제3호)을 말합니다. 환경피해의 원인은 다양하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상 분쟁조정 대상>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



일조, 조망, 통풍과 관련된 분쟁(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와 복합적인 경우)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관한 분쟁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관련된 분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가정주택의 애완견 소음·악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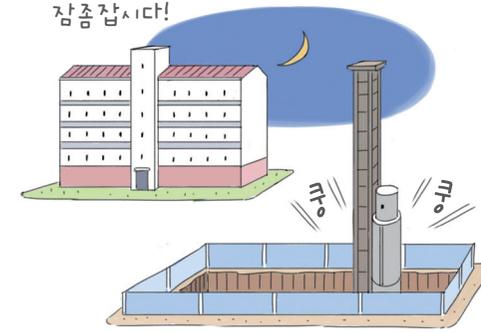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

| 환경피해의 구체적 모습 |



① 늦은 시간 공사 소음으로 주민의 휴식 방해 및 정신적·건강상 피해 발생 가능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②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정신적·건강상 피해 발생 가능

알아두기!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아파트, 다세대주택

신청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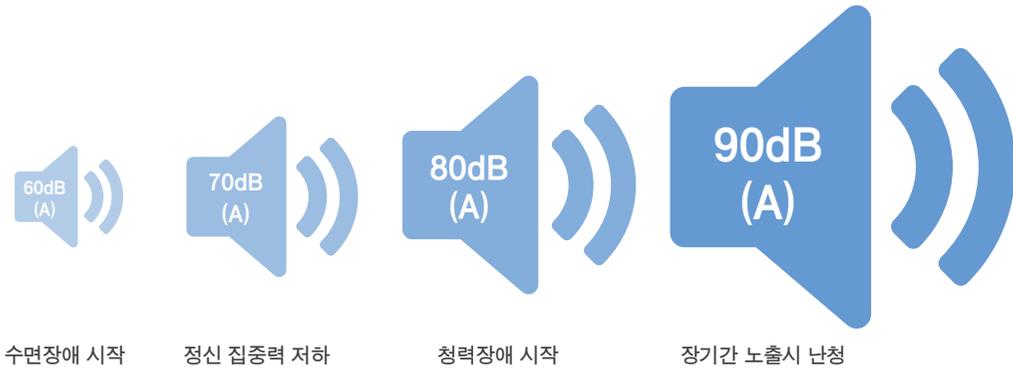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단독주택인 경우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신청 ☎ 02-2133-1380

소음에 대한 반응

소음 레벨[dB(A)]

소음에 대한 반응은 시간과 장소, 사람마다 다르고, 피해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dB(A)의 소음 발생 시 수면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환경기준 예시(소음진동관리법상의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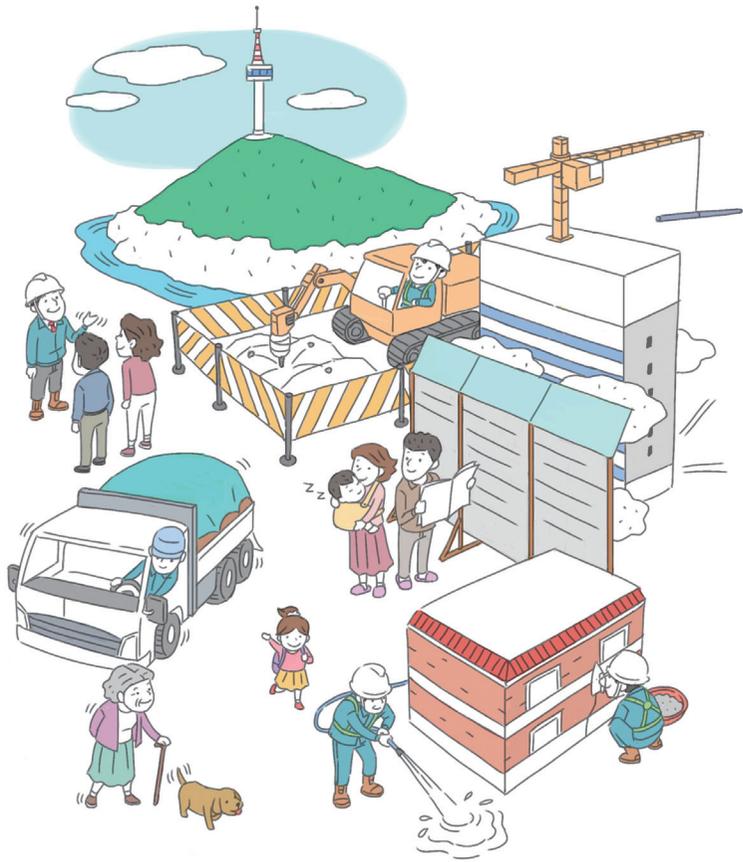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주거지역에서 공휴일에 공사를 하는 경우 5dB(A) 강화된 기준 적용 : 공휴일 주간 공사장 60dB(A)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그러나 환경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STEP
02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피해의 특징

-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 환경피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상황재현 곤란
-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공공장소 소음 등)
- 가해자의 사전배려가 소홀한 경우가 많음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필요성

-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확대 사전예방
-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환경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보완
- 법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 빠른 처리기간으로 당사자 만족 증대



[환경분쟁조정제도 알아보기]

알 선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 정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고,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 정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 재

분쟁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재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비교하기]

	알 선	조 정	재 정	중 재
장 점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처리기한이 짧다.(2개월)	조정안을 수락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점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다.	상대적으로 처리기한이 길다.(7개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없다.	상대적으로 처리기한이 길다.(7개월)	분쟁 당사자 간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가 없으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종류 및 방법

신청하실 수 있는 분쟁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이 알선, 조정, 재정, 중재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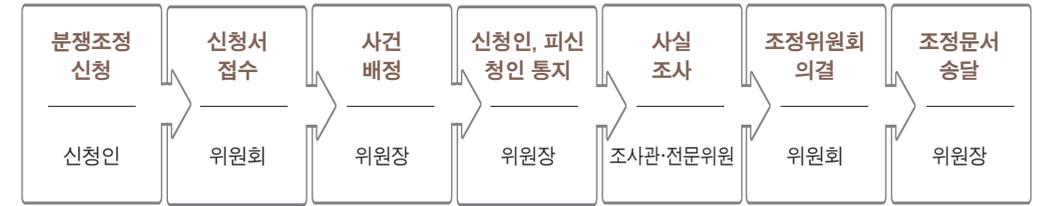
신청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 02-2133-4251~3
- 팩스 : 02-768-8857
- 온라인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http://edc.seoul.go.kr>)

접수처리

신청서 및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수수료 안내 후,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처리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 처리절차]



재정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에게 재정문서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피해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되며, 수수료 납부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Q&A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가지 모두를 신청하실 수는 없고 분쟁조정제도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알선이나 조정신청 후 분쟁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재정신청 혹은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피해종류	필요서류
공통	신청서 1부, 선정대표자 선정 1부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 1부
정신적 피해	피해발생 장소가 거주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발생 장소가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피해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건물균열 피해	건축물관리대장 1부, 공사원가 계산서 1부, 대표 피해사진
영업손실 피해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영업판매 실적(최근 3년간)
건강상 피해	전문 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등
충간소음 피해	충간소음 측정치, 바닥충격을 측정치(전문기관)

<서식1-환경분쟁조정신청서>

환경분쟁조정신청서 작성하실 때 피신청인(시공사, 건축주 등)의 상호,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해 피신청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 취지 및 이유와 분쟁경과의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 가능합니다.

[별첨1] 취지 및 이유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서 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건물 수리비 부담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별첨2] 분쟁의 경과

- 2025. 1. 10.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 발생
- 2025. 1. 15.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 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조정 불가
- 2025. 2. 16. 관할 구청 민원 제기
- 2025. 4. 17. 구청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어 관계자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 2025. 5. 10. 분쟁조정 신청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김○○ 외 ○명 생년월일 1900.00.00. 전자우편 0000@xxxx.com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0동 000호	
	전화번호 02-000-XXXX	팩스번호 02-000-XXXX 휴대전화번호 010-0000-XXXX

신청사항	건강피해 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인정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 석면건강피해 조사 요청 * 건강피해 조사 청원은 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참조	[] 알선 [] 조정 [] 원인재정 [V] 책임재정 [] 중재	[] 의료비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 유족보상비 [] 재산피해보상비	[] 원발성 악성종괴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미만성 흉막비후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미지급 진료비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김○○ 생년월일 1900.00.00. 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0000-XXXX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0동 000호
------------	--

환경오염 발생원 (오염원 또는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상호(명칭) 김○○, ○○상회(대표자 : 이○○) (법인일 경우) (주)○○건설, (주)○○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0동 000호
-------------------------------	---

피해내용	1. 피해발생 일시·장소 별도 2024년 2월~2025년 1월 서울특별시 00구 00길 00(피해의 근원지 작성) 공사장 피해(공사현장), 사업장 소음·진동·악취(사업장 주소), 중간소음(중간소음 진원지) 등 2. 피해발생 경과 또는 분쟁경과 별도 첨부 3. 피해의 내용 및 금액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상 피해 5,000,000원
------	--

- 기타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청인

김○○ 외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신청 수수료(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신청서 및 피해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위 : 원)

조정가액	알 선	조 정	재정/중재	비 고
500만 원 이하	10,000	10,000	20,000	현금, 카드 또는 온라인 전자지불
600만 원		11,500	23,000	
700만 원		13,000	26,000	
800만 원		14,500	29,000	
900만 원		16,000	32,000	
1,000만 원		17,500	35,000	
2,000만 원		32,500	65,000	
3,000만 원		47,500	95,000	
4,000만 원		62,500	125,000	
5,000만 원		77,500	155,000	
6,000만 원		87,500	175,000	
7,000만 원		97,500	195,000	
8,000만 원		107,500	215,000	
9,000만 원		117,500	235,000	
1억 원		127,500	255,000	



▶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중 신청하실 제도를 클릭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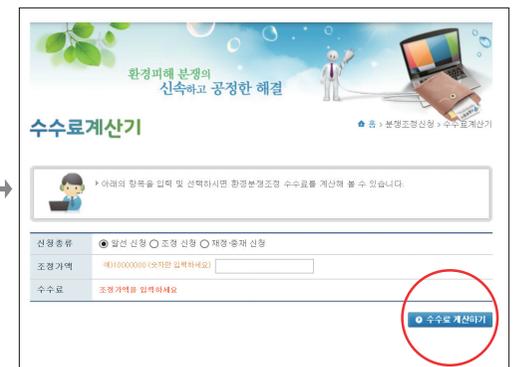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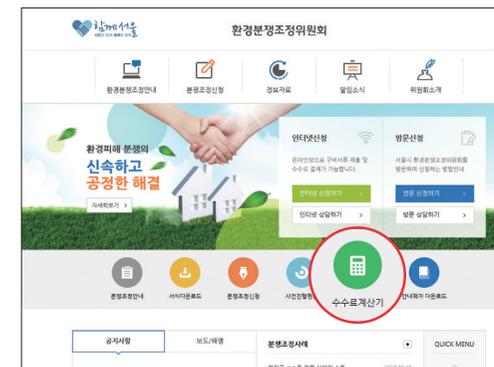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끝!

▶ 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수수료 안내 후,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이용이나 방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7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의 경우 담당직원이 집을 직접 방문하여 분쟁 상담 및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수수료 확인은 홈페이지(edc.seoul.go.kr) '수수료계산기' 참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대상에 맞게 중앙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 **중재내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분쟁의 재정 및 중재
- **조정가액** : 1억 원 초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 이외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한다.

- **중재내용**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를 제외한 분쟁 재정 및 중재
- **조정가액** : 1억 원 이하

[기타 재정신청]

조정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재정신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STEP 03

환경분쟁 참고자료



층간소음 해결방법

1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중재

-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요청 ※ 관리사무소 문의

2 단계

상담조정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컨설팅단 실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이웃 간 분쟁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 냅니다.

-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40100
- 대표전화 02-2133-7298(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 홈페이지 <https://floor.noiseinfo.or.kr>
- 대표전화 1661-2642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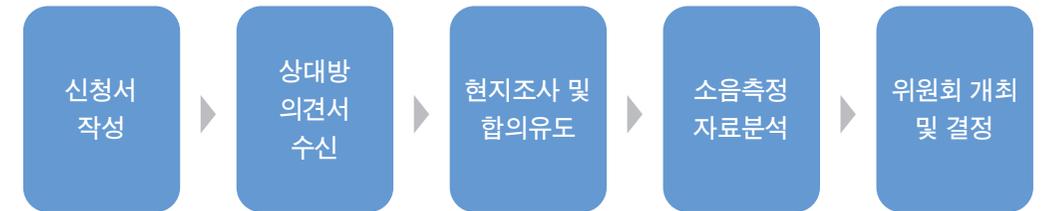
분쟁조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홈페이지 <http://edc.seoul.go.kr>
- 문의 02-2133-4251~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조정신청 절차]



만약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측정 수수료의 일부를 포함해 배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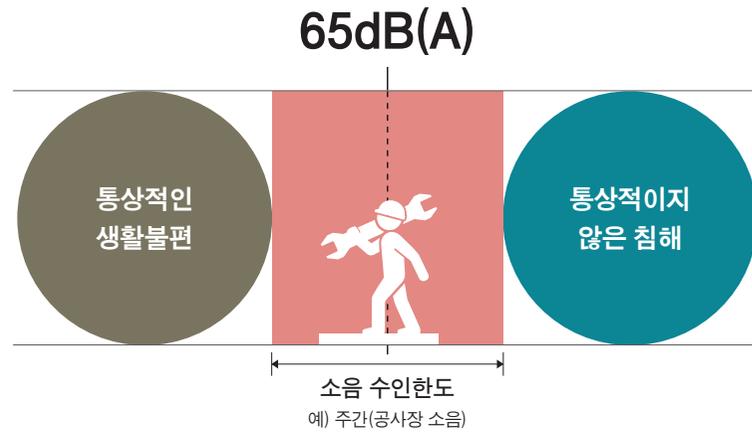
전문기관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시기 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에서 전문상담과 층간소음 측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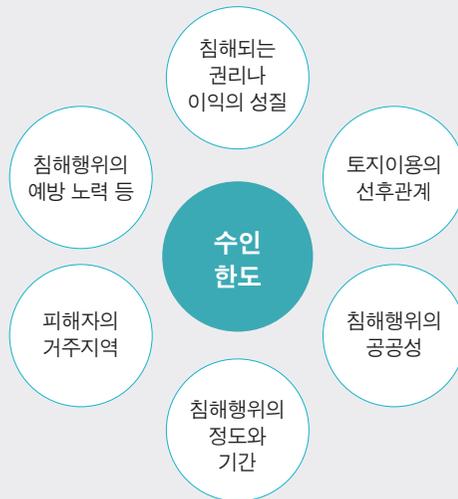
수인한도

수인한도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용인해야 하는 '통상적인 생활 불편'과 '통상적이지 않은 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요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재산적 피해인지 신체적 피해인지 등), 침해행위의 공공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의 정도와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인한도 판단요소>



많은 시공사들이 환경관련 개별법상의 규제기준을 잘 준수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은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제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환경피해 배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기준과 수인한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피해 저감노력 등을 소홀히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01.26. 98다23850판결

<환경관련 법원칙>



① 무과실책임원칙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엄격하게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여 시민의 환경피해 구제를 보다 원활히 하여 환경권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개연성 이론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환경피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상당관계의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며, 가해자가 반증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③ 입증책임의 보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환경피해 원인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 배상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는 시민의 환경권의 향상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9조에 따라 시민의 인과관계 입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고려기준 및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수인한도 고려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 참고

소음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고려기준	
공사장(건설기계)	Leq, 5min	65dB(A)	
공사장(발파)	Lmax	75dB(A)	
공장·사업장	Leq, 5min	주간	주거지역 등 : 55dB(A) 그 밖의 지역 : 65dB(A)
		야간	주거지역 등 : 45dB(A) 그 밖의 지역 : 55dB(A)

※ 피해자의 주거지역이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5dB(A) 이내를 수인한도 고려기준에 보정할 수 있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ecc.mcee.go.kr)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고려기준소음도

(단위 : 천원/인)

초과소음도 (dB(A))	1이상 ~ 5이하	6 ~ 10	11 ~ 15	16 ~ 20
6개월 ~ 1년 이내	347 ~ 1,279	490 ~ 1,805	693 ~ 2,557	980 ~ 3,585
6개월 ~ 1년 이내	1,279 ~ 1,637	1,805 ~ 2,318	2,557 ~ 3,275	3,585 ~ 4,637
1년 ~ 2년 이내	1,637 ~ 1,996	2,318 ~ 2,820	3,275 ~ 3,991	4,637 ~ 5,641
2년 ~ 3년 이내	1,996 ~ 2,211	2,820 ~ 3,130	3,991 ~ 4,422	5,641 ~ 6,250

※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임

※ 적용기준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알아두기!

수인한도와 피해배상액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주소
http://ecc.mcee.go.kr	044-201-7969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3683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032-440-35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과	062-613-433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82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23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353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강원도	환경정책과	033-249-41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043-220-43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라북도	생활환경과	063-280-41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1-286-7052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54-880-3528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25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064-710-4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기타 분쟁조정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층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3394-9870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 2층 201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055-771-8448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서울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별 구청 문의	각 자치구 주택과

STEP 04

관련서식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	건강피해 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인정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 석면 건강피해 조사 요청 ※ 건강피해 조사 청원은 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참조	[] 알선 [] 조정 [] 원인재정 [] 책임재정 [] 중재	[] 의료비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 유족보상비 [] 재산피해보상비	[] 원발성 악성종양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미만성 흉막비후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미지급 진료비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환경오염 발생원 (오염원 또는 파산청인이 있는 경우)	상호(명칭) 소재지
-------------------------------	---------------

피해내용	1. 피해발생 일시·장소 2. 피해발생 경과 또는 분쟁경과 3. 피해의 내용 및 금액
------	---

기타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석면 건강피해 조사 요청
 - 가.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 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분쟁 조정
 - 가.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나.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오염도 측정 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 다.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라.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 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아.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자.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차.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카.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타.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 파.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4. 석면피해인정
 - 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발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종괴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 해구제법 시행령」 발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 2)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애 검사를 실시하 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라.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 가. 공통 제출자료
 - 1)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2)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3)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 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서 발급한 진료기 록·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합니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 개별 제출자료
 - 1)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 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 비 신청의 경우
 - 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 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 4)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 가)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수수료

1. 없음

2.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1 또는 시·도 조례 참조

3. 없음

4. 없음

5.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의 건강피해 조사 청원,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피해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 업무를 일부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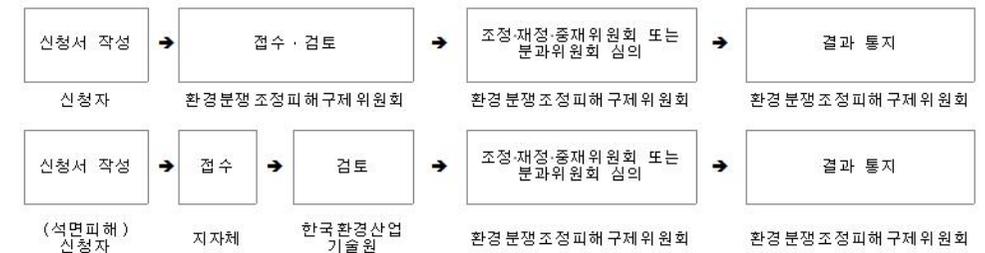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류 미비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조사 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선정대표자 선정

접수번호	접수일	
사 건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신청인	외 명	
피신청인		
선 정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들을 환경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외 명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수수로 없음
------	--	-----------



분쟁의 경과

일자	내 용



오시는 길



1호선 ①번 출구
2호선 ⑪ ⑫번 출구로 나오시면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발행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작 서울시 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팀 이수연, 백윤미, 전호진, 김윤준, 함승현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5년 12월 문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02-2133-4251~3